

어메니티를 이용한 농촌활성화 방향

임형백

서울대학교 강사

A Study on the Use of Amenity for Rural Viability

Hyung-Baek Lim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demand for green tourism has increased in Korea. The increasing demand for green tourism caused is by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longing for rural life. Moreover, many view amenity regarded as a good resource of green tourism. Amenity is however an abstract and complex idea. Even though many people were interested in amenity, the movement or practice of amenity in Korea was still as its in infancy stage. This paper was an exploratory study of amenity and paving the way for further studies on amenity in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explor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rigin and history, and classification of amenity, 2) and decide on future course of using amenity for rural viability.

Key Words : Amenity, Rural viability

I. 서 론

한국에서 농업·농촌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으며, 최근의 시장개방 속에서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농정이 실시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둔 것은 없다. 임기응변의 농정이 수립되었고 자주 변경되었으며, 농업·농촌을 사수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성공적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임형백·윤준상, 1999: 105).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을 안정적이고 저렴한 식량공급지로서 인식하였다. 또 전근대적 농업구조가 낮은 농업소득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농촌이 낙후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생산성의 향상을 통하여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농업확장

주의(agricultural expansionism)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확장주의를 통하여도 농업의 경쟁력은 타 산업에 비하여 높아지지 않았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는 늘어났다. 더구나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농촌은 더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만의 폐쇄적인 공간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을 단순히 산업으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농촌공간에 내재하는 가치를 현실화하여 농촌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어메니티이다. 특히 IMF 이후 다양한 형태의 귀농으로 인하여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다양해지고, 노동시간의 감축으로 인한 녹색관광(green tourism)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어메니티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도입단계이며 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편이다. 또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메니티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메니티는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의 철학적 배경,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고, 농촌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의 이용방향을 탐색하여 보았다.

II. 어메니티의 배경

1. 어메니티의 철학적 배경

동양과 서양의 사상은 출발점에서부터 많은 차이점이 있다. 동양은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지며 따라서 성(the sacred)과 속(the profane)을 구분하지 않았다. 반면 서양은 직선론적 역사관을 가지며 따라서 성과 속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양의 종교인 불교와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를 보아도 명확히 나타난다(임형백, 2001: 191).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늘과 별들이 순환한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시간 역시 순환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회화 '천지창조'에서보면 이 때에 이르러 서양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것을 포기한다. 왜냐하면 신이 '천지창조'를 바보처럼 되풀이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진경, 1997: 44). 서양에서는 초기에는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다. 신들이 세상의 중심이었으며 인간은 나약하고 때로는 무가치한 존재로까지 여겨졌다. 그러다가 Socrates(B.C. 470?-399) 이후 서양에서 인간이 철학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또 그의 제자 Aristotle(B.C. 384-322)의 이데아 사상 이후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서양을 지배해왔다.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임형백, 2001: 191). 그러나 이후 중세까지 인간의 지식의 증가는 느렸고 종교적 권위가 세상을 지배했다. 중세를 거치면서 인간은 이성을 무기로

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서양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자연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희생을 감수하여야 할 존재로 여겨졌으며, 삶의 공간을 인간의 능동적 힘으로 인간에게 편리하도록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또 이성에 기초한 수학과 과학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으며, 서양 과학문명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러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진보라는 관념이 서양에서 명확하게 자리 잡았으며(Foucault, 1986), 서구화는 근대화와 동일시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경제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여년전 영국 Oxford 대학에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강좌가 처음 개설되었을 때, 시니어(Senior, Nassau William)¹⁾는 취임 강의를에서 경제학의 장래를 예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제학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윤리학 중 가장 매력적이고 효용이 크며 훌륭한 학과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부의 추구는 인류의 도덕적 향상의 위대한 원천이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을 질병과 기아에서 구하고 산업혁명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이러한 서양의 사유방식은 근대화와 민주화의 동의어로 여겨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전쟁 나아가 핵무기로 인한 인류공동의 문제가 제기되고 경제성장 일변도의 삶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물질적 풍요 이외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추구가 시작되었다(임형백, 2001: 191-192). 이는 서양의 도구주의적 이성에 대한 반성이며 자연과의 상생을 모색해 온 동양적 사상과도 일맥 상통한다.

사실 서구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1) Senior, Nassau William(1790~1864)는 이 강좌의 초대교수(first professor)였다. 반면 마르크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는 리카르도(D. Ricardo)와 시니어의 경제학을 '음울한 학문'이라 부르며 비난·거부했다.

하나는 적어도 지난 3천 년 동안 서구의 철학과 종교가 지나치게 이원론적이어서 실재를 물질과 정신으로 엄격하게 분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원론은 고대 그리스와 유대-기독교 문화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Wertheim, 2002: 41-42).

환경과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에메니티는 이러한 서구적 이원론, 즉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던 사고방식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대안의 추구이다. 인간을 분자생물학적으로 이해하려던 서양의학이 동양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대체의학을 추구하는 것이나, 홀리스틱(holistic) 사유 등은 이러한 전통적인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실망 내지는 불만족의 표현이다(임형백, 2001: 192).

산업혁명 이래의 근대(modern)는 기계나 기술이 사람을 부리는 사태를 낳았다. 20세기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지구규모의 환경파괴를 거쳐 핵무기와 자원낭비는 인류에게 위기의식을 가져다 주었다. 표면적으로는 과학의 발달로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시기이면서 동시에 20세기는 실제로는 극도의 '反에메니티'의 세기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내에서도 A. Einstein(1879~1955)의 상대성 이론(relative theory)과 N. Bohr(1885~1962)의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의 등장으로 인하여 과학의 절대성이 부정되고 과학의 상대성과 확률성이 자리를 잡았다(임형백, 2001: 192). 여기에서 특히 환경과 인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삶의 쾌적함' 즉 '에메니티'라는 관점에서 21세기를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연을 지배하는 것보다도 자연을 소중히 다루는 쪽으로 접근해야 하며, 넓은 의미의 에메니티는 인간의 활동의 모든 차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생태학(ecology)과 같은 과학적 인식의 발전을 넘어서, 풍경, 건축물의 질 등 미적인 배려를 전제로 하고 있고, 행동의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리학과도 관련이 있다(Augustin Berque, 酒井憲一, 1998, 재인용). 이

는 서양에서도 많은 학자들(Horkheimer and Adorno, 1996; Jonas, 1994)이 주장해 온 바이며, 사회생태론이나 에코페미니즘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결국은 서양의 전통적인 환경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며,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서양식 사유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결국 에메니티는 전쟁과 불신, 과학문명의 맹신으로 인류와 지구의 존속이 위협받게 된 20세기를 교훈삼아, 21세기를 평화와 믿음, 인간과 자연존중으로 참된 시대로 열어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에메니티는 작게는 생활인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서 주체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의 환경을 새롭게 바꿔나가며 나아가서 국제적인 친교를 끌어내는 단계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을 없애고 대등하게 인류가 에메니티로 교류해 나가는 그러한 쾌적한 사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질이 권력이나 부 등으로 말미암아 편재되어 있는 것, 결국은 에메니티재(財)가 편재되어 있는 불평등성을 없애고 물질이 평등하게 리사이클해 순환하고 나아가 자유와 문화가 꽃피는 쾌적한 사회가 바로 에메니티가 지향하는 상태이다. 사람과 물질의 평등순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가령 과학·윤리·예술·사람과 물질에 대한 애정을 융합한 다음에 에메니티 사상에 의한 정보·교통수단의 향상, 욕망의 억제와 남을 배려하는 매너, 아름다움의 공유, 이웃사랑, 인류애, 지구애로 까지 승화시킴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에메니티는 특정종교와 관계가 없는 시민운동에서 출발했지만 인류의 종교가 지닌 보편타당한 본질에 가장 접근하며 이를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에메니티의 근본문제는 크게는 '21세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철학적 물음으로 귀결되며, 작게는 '인간이 지향하는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떻게 지역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임형백, 2001: 193-194).

2. 어메니티의 기원과 역사

‘어메니티’의 어원은 라틴어의 아마레(amare: 사랑하다)→아모에니타스(amoenitas: 쾌적한, 기쁜)에서 유래하여 영어의 amenity(쾌적함, 기쁨)로 됐기에 이는 어메니티의 ‘사랑’의 축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원상으로 ‘사랑’과 ‘생명’이 어메니티의 두 개의 축(軸)을 형성하고 있다.

이후 어메니티는 15세기에 이미 생활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때는 질(質)로서의 장소나 상황, 기후 등의 쾌적성과 관련해 사용되었다. 중세는 기독교의 보급과 함께 그리스 사상이 지향하는 인간과 자연과의 분리가 강해, 자연은 신의 지배에 따르고 인간 앞에 신의 질서를 보여주는 정적인 대상으로 자리매김됐다. 그와 같이 자연을 파악한 데서 나온 쾌적성이 어메니티여서 상당히 정신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경부터 어메니티는 사물로서의 장소나 경치 등의 쾌적함도 나타냈다. 그 이유는 질적인 것에 대한 양적인 파악과 정신에 대한 물질적 구체성에 의한 쾌적성도 평가되고, 19세기경부터는 특히 인간회복으로 인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어메니티가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바람직한 인성이나 태도로부터 나오는 쾌적함도 나타내게 된 것 같다(酒井憲一, 1998: 75). 그러나 어메니티라는 단어는 번역어만 8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김해창, 1999: 195), 추상적인 개념이다.

영국의 도시계획 학자 Smith(1974)는 어메니티가 공중위생(공해방지), 쾌적함, 보존의 세 가지 모습을 지닌 복합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어메니티를 쾌적함으로만 번역해서는 ‘쾌적함’ 이외의 두 가지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였다.

어메니티 운동은 산업혁명하의 19세기(3)에, 영

국의 도시에 몰려든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생긴 이상한 질병이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공중위생면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도시 하층민(노동자)들의 거주공간은 과밀·빈곤·폭동·전염병 등의 도시문제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중위생에서 어메니티의 대상으로 삼았던 계층이 어떤 계층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하나는 과밀·열악한 노동자나 하층계급을 대상으로 한 공중위생이며, 다른 하나는 중산계급의 교외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중위생이다(酒井憲一, 1998: 79-80).

당시 영국에서는 어메니티를 통하여 하층노동자 주택지역에 대한 공중위생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중산계급의 쾌적한 교외주택만들기운동으로 확대되어 나아갔을 것이다. 초창기에는 어메니티가 산업혁명후의 더러운 도시의 출현에 대한 안티테제(反定立)로서 발생한 ‘중산계급의 미학’으로서, 도시의 하층에서부터 실천된 것이다. 이는 어메니티라는 사상이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임을 나타낸다. 그 핵심은 생명구제이고, 특히 그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이 된다. 이것이 어메니티의 ‘생명’ 사상이다. 어메니티라는 말이 영국의 법률에 등장한 것은 1909년의 도시계획법에서 였다. 그러나 이 법은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러한 열악한 지역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교외주택지의 도시계획을 위한 법이었다. 이후 영국에서는 1967년 ‘시빅·어메니티법’이 제정돼 역사적 건조물 등의 보존을 꾀하는 ‘보전지역’ 제도가 시행됐고, 1974년에는 ‘도시농촌어메니티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제도가 더욱 충실해졌다.

어메니티는 영국 초기 도시계획의 기치였으며 주민참여를 강조했고(Smith, 1974), 영국에서는 어메니티 관련법률이 공중위생법, 주택법, 도시계획법의 순으로 발전한 것이다(酒井憲一, 1998: 79). 이러한 과정에서 공중위생영역에서 생겨난 어메니티가 근대도시계획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어메니티의 발생지인 영국에서는 도

2) 어메니티의 축도(軸圖)와 개념도에 관한 보다 상세한 이해는 사카이 겐이치(酒井憲一), 1998, p. 74를 참조바람.

3) 이에 대하여는 19세기가 아니라 18세기라는 주장도 있다.

시계획과 지방계획의 핵심개념으로 일컬어져왔지만 인류의 역사가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어서 환경혁명기를 의식하게 됨에 따라 한결같이 환경의 사상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도시계획도 도시환경 만들기이므로 환경의 사상에 포함시켜도 이상할 것은 없다(酒井憲一, 1998: 47).

어메니티를 '사는 느낌이 좋음', '편안함' 등으로 번역하는 것도 사랑과 생명을 내포한 본질, 생명구제를 위한 공중위생을 원점으로 한 실천의 역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상·하수도 등의 도시 기반시설 정비가 도시계획과 관련되고 점차 도시계획의 목표로 당연시되면서 공중위생을 강조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랑'과 '생명'이 어메니티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어메니티에 내재하는 사랑과 생명의 빛에서부터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을 참된 어메니티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메니티는 환경의 사상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에서 올바른 도시계획, 자연보호, 환경보전은 물론, 안전·보건·의료·복지어메니티로 유도될 수 있다. 그러나 어메니티의 바탕을 사랑이나 생명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용 측면에서는 너무 추상적이다.

일본에서는 1976년부터 1977년에 걸친 OECD 환경위원회의 대일 환경정책 리뷰에서, '공해방지를 위한 투쟁에서는 이겼지만 어메니티 투쟁에서는 이기지 못했다(OECD, 1978)'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놀란 환경청 등이 대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酒井憲一, 1998: 47-48). 환경청은 '쾌적환경 정비사업(어메니티타운 계획 책정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했다. 1995년 12월 환경기본계획에 '어메니티'가 명기되었고, 어메니티타운 계획은 1984년부터 3년간 58개 시정촌을 지정하면서 끝이났다. 수직적인 행정구조 속에서 이 계획을 추진한 시정촌은 수평적인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점차 수평적인 주민참여로 바꾸었다(酒井憲一, 1998: 121-125).

한국에서도 OECD 가입 이후 어메니티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농촌에서도 농촌활성화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부산시가 '부산 어메니티플랜'을 만들고, 대학원에 강좌가 개설되고, 민간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메니티 사상의 제창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어메니티 사상은 아직 완성된 사상체계가 아니다.

3. 유럽에서의 어메니티 등장 배경

첫째, 농업확장주의(agricultural expansionism)의 한계이다. 서구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의 낙후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소득의 탓으로, 낮은 농업소득은 전(前)근대적 농업구조의 탓으로 진단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도 농업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농업확장주의(agricultural expansionism)를 채택하였다. 기계화, 과학적 영농기법의 도입, 농장의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도 다른 산업에 못지않은 소득과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박영한·조영국, 2002: 147-148). 또 농업확장주의는 식량안보와도 맥을 같이 해왔다. 2차 세계대전기간 영국이 겪은 식량위기를 지켜 본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농촌의 주 존재 이유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이었다. 서유럽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동농업정책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공급의 안정화를 추구해왔다.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논리는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기 위하여 생산성 증대에 중점이 두어졌다.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이 수립된 이후 농산물 최대 수입국이던 EU국가들의 식량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대에 자급자족의 상태에 도달하였고, 1980년대 이

후로는 거의 모든 농산물의 자급률이 100%를 상회하게 되었다(사공 용, 2002: 64). 이러한 농업확장주의의 흐름은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농산물의 과잉공급과 이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추진해왔던 농업생산증대 일변도의 농업개발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어메니티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어메니티는 농촌개발과 관련한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둘째, WTO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여건의 변화이다. 특히 케언즈 그룹4(Cairns Group)은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와 각 국가들이 농업 생산에 영향을 주는 각종 대농민 지원정책의 축소·철폐를 주장하였고, 유럽은 가격지지나 농산물 수출보조 같은 강력한 시장개입정책을 더 이상 실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농산물 보조금 지급은 케언즈 그룹과 유럽의 이해가 직접 충돌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단기간내에 중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특히 유럽 최대의 농업국가이면서도 소농이 농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제 농촌은 농산물의 공급지로서 농민만의 폐쇄적 공간으로 남을 수 없었다. 농촌은 신자유주의적 교역질서 속에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보전하여야 할 공통의 공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WTO 협정의 제약을 피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 주요농산물수출국을 가리킨다. 첫 회의를 개최한 호주의 지명을 따라 명명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테말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 볼리비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피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은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Non Trade Concerns)을 확대 발전시킨 개념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개념과 논리를 개발하고, 식량안보, 환경보존, 농촌사회의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사회와 문화의 보전과 같은 사항들이 농업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개방의 논리에 대응하고 있다. 농업의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원적 기능의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함께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식민지통치기간동안 유럽식 농업모델을 이식한 아프리카의 토양침식과 환경파괴, 농산물과 식품관련 다국적 기업에 의해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파괴, 유전자조작농작물(GMO)에 대하여도 반성과 소비자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특히 1985년 영국에서 처음 광우병(BSE)이 발견된 이래, 영국에서만 480만 마리의 소를 도살하였다. 영국에서는 광우병 감염사례가 18만 건이 보고되었고, 87명이 사망했다. 유럽국가에서도 1,300~1,400건이 보고되었고 영국 산쇠고기 수입금지를 놓고 EU와 영국간에 통상 마찰이 일어났고, 1999년에는 유전자조작 농작물을 두고 미국과 EU간에 통상마찰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히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종래의 집약적인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비판과 생산성위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환경운동이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집약적 농업을 조장해 온 공동농업정책(CAP)의 시장개입이 비판받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CAP의 높은 수준의 가격지지가 집약적 농업활동을 유도하였고, 그로 인한 비료와 농약의 남용이 환경을 악화시켰고 농산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따라 공동농업정책은 환경문제를 고려하며, 종래의 '농업생산증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원리에 대한 3가지 보

완조치(the three accompany measures)가 1992년 5월에 합의되었다. 이들 3가지 보완정책수단들은 환경농업보전형농업 프로그램(규칙2078/92) (〈부록 1〉 참조), 조기은퇴계획(규칙2079/92)과 산림원조계획(규칙2080/92) 등이다. 이들은 새로운 조치가 아니고 이전의 조치를 강화 조정한 것이다(규칙797/85와 규칙1760/87). 이들 정책수단 중에서 다른 정책수단은 회원국의 선택사항이었으나 환경농업 프로그램은 의무규칙이었다(유진채, 1999: 26).

‘조방화’는 투입과 산출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두 과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과정은 국가가 농산물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입재를 감소하도록 유도할 때 나타난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곡물재배경지를 줄이기 위하여 휴경정책이 실시된 것이 좋은 예이다. 두 번째 과정으로는 농민들이 스스로 생태학적인 영농방법에 의해 작물과 가축을 생산하는 경우이다(Bowler, 1999: 89-90).

그 동안 EU는 역내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면서 과잉 생산이 초래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한 수출보조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되었다. 예를들어 곡물재고가 1993년 3,270만 톤으로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곡물관련 수출보조, 시장개입가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1990년 38억 ECU에서 1993년 66억 ECU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1992년 농업개혁을 하면서 목표가격을 점차 인하하고, 일정 면적으로 휴경(acreage controls)시키는 의무를 지키는 농가에 차액을 보상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

고 있다(사공 용, 2002: 64-65).

넷째, 농촌사회가 변화하였다. 20세기 들어 선진국 농촌은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었다. 하나는 전(前) 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 다른 하나는 산업사회에서 탈 산업사회로의 변화이다. 전 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의 핵심은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탈바꿈한데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에서는 대규모 인구유출이 이루어졌고, 또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남야도는 과잉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비로소 농업의 근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인구의 유출을 반드시 나쁘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간주되었다(박영한·조영국, 2002: 147). 그러나 농촌가운데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농촌사회가 위협받는 곳이 나타났다. 이러한 곳에서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동시에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인구의 유입으로 오히려 농촌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rural renaissance)이 나타났다(Champion, 1998: 35). Lewis와 Maund(1976)는 도시화를 산업사회에 있어서 농촌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 요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구이동형태를 인구유출(depopulation), 인구유입(population), 인구환류(repopulation)로 구분하였다. 인구유출에 참여하는 집단은 농촌내에서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구집단이고, 유입인구는 2,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상대적으로 젊고 부유한 인구집단으로, 환류인구는 은퇴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았다. 그리고 특히 유입인구와 환류인구들은 농촌주민들과는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가지며, 농촌보다는 도시와 더 빈번하게 교류하는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유입과 유출에 의해 농촌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다섯째, 농촌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농촌에는 비농업종사자들의 수가 점점증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관광(녹색관광) 종사자의 증가가 두드러

5) WTO에서는 국내보조를 생산과의 연계성 및 허용여부에 따라 녹색조항(green box), 청색조항(blue box)으로 나누고 있다. 녹색조항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로써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재해보상지원, 이탈농 지원, 조건불리지역 지원, 환경농업 지원이 해당된다. 청색조항은 생산과는 연계되지만 생산제한을 조건으로 허용된 직접지불제도로 EU의 보상직접지불제도, 미국의 1996년 농업법 이전의 차액보상제도가 해당된다(사공 용, 2002: 56-57).

졌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노동시간 감축과 경제적 풍요는 녹색관광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녹색관광의 발상은 유럽대륙에서 영국으로 들어왔는데, 유럽 가운데서도 특히 프랑스의 스키리조트나 지중해연안의 리조트 개발로 대중관광(mass tourism)의 폐해가 알려지면서, 대형으로 상업화가 이루어진 거점집중형 관광이 아닌 지역의 생활이나 환경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규모의 관광이 모색되었다(山崎光博 外 2인, 1997: 28). 1990년에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영국국민의 약 67%가 연간 적어도 1회 정도 농촌지역을 방문했다(Countryside Commission, 1991). 이와 같은 관광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자연과 경관의 보존, 역사적인 건축물,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문화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온 것이다. 그러자 어메니티를 이용한 농촌관광을 통해서 농촌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넘어, 농촌인구 유지와, 도시실업자 흡수까지 모색하게 되었다.

Ⅲ. 어메니티를 이용한 농촌활성화의 방향

1. 어메니티의 분류와 획득

어메니티는 문화개념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환경의 사상이지만 환경을 넘어선 더 큰 사상으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酒井憲一, 1998: 47). 따라서 환경과 문화, 물질적인 면에서부터 정신적인 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참된 어메니티라고 할 수 있다. 어메니티의 대표적인 분류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또 어메니티 획득을 위한 여러 차원과 수단을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어메니티는 추상적이고 현재로서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자원이다. OECD(1999)도 농촌 어메니티를 외부성(externality)이 강한, 시장실패영역에 존재하는 지역공공재(local public goods)로 파악하고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적정성(non-optimal)의 문제를 내부화(internalization)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어메니티는 그것이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보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촌공간의 여러 잠재적 가치들(어메티니) 중에서 일부를 선택적으로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표 1>의 분류에서 자연 어메니티, 경관 어메니티, 역사·문화 어메니티가 가치를 현실화하기에는 가장 편리하다. <표 2>에서 보더라도 문화와 토지이용·자연조건에서 어메니티를 획득하기가 가장 편리하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어메니티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다른 어메니티 요인들을 부수적으로 고려하

<표 1> 어메니티의 분류

사카이 겐이치(酒井憲一)의 분류	8 분 법
① 생명·안전 어메니티	① 생명·안전 어메니티
② 자연 어메니티	② 건축·주거 어메니티
③ 역사·문화 어메니티	③ 지역창조 어메니티
④ 미적 어메니티	④ 지구환경 어메니티
⑤ 편리 어메니티	⑤ 역사·문화 어메니티
⑥ 개성·종합 어메니티	⑥ 경관 어메니티
	⑦ 자연 어메니티
	⑧ 복지 어메니티

〈표 2〉 어메니티 획득을 위한 여러 차원과 수단

차 원	수 단
문화 가치의식	• 공중도덕심의 고양 및 개인의 자각, 교육의 충실, 지역주민활동, 기타
생활 활동 산업 활동	• 공해규제, 쓰레기대책, 공해방지협정, 건축협정, 기술자훈련 및 양성 등
인프라스트럭처	• 공공사업에 의한 공원과 도로 등의 정비, 공공용지의 확보 및 양성 등
토지 이용 자연 조건	• 도시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자연환경의 보호, 기타

출처 : 酒井憲一, 1998, p. 97.

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의 3가지 어메니티는 자연상태에 혹은 기존의 조형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추가적인 투입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지역에서 어메니티를 이용한 녹색관광을 시작하면서 노동력이나 비용 등 많은 추가적인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차후에 발생하는 편익(이익)이 합리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는 원칙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명확히 형성되어야 한다. 초창기에 어떠한 어메니티를 어떠한 방법으로 획득하여 이를 이용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농촌활성화에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

2. 어메니티의 소비에 대한 보상체계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보상체계가 결여될 경우 어메니티가 지속적

로 생산되기 어렵다. 따라서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의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 농촌 어메니티를 이용하는 녹색관광의 소비자는 대규모유원지 등에 비하여 적은 비용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녹색관광의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수립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보상체계는 어메니티에 대한 인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예를 들어 자연휴양림이나 농촌경관은 모두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한 어메니티이다. 그러나 수련활동이나 하이킹 등의 목적으로 관리되는 휴양림의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보상체계가 명확하나, 농촌경관은 인간과 농업생산과정의 부산물이지 의도적으로 어메니티로 조성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농촌경관을 소비자가 이용할 경우 직접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체계는 없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어메니티의 생산자에게 보상체계를

〈표 3〉 인적 기여의 정도에 따른 어메니티의 범주

인적 기여 정도에 따른 어메니티의 3가지 범주	예
거의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	원시림, 산, 강 등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에 의한 어메니티	농촌경관, 자연휴양림 등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메니티	역사적 기념물, 예술 작품, 전통 수공예품, 마을 축제 등

출처 : OECD, 1997.

〈표 4〉 어메니티(환경적 상품)에 대한 지불의사 평가 방법

평가 방법	내용
임의 가치 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가설적 시장 상황을 설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묻는 방법
여행 비용 방법 (travel cost method, TCM)	특정 지역에 접근하는데 드는 개인들의 여행 비용을 추산함으로써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재산 가치 방법 (property value method, PVM)	주택 판매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환경적 품질의 차이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방법

출처 : Johansson, 1994를 참고하여 작성.

수립할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메니티의 소비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가 측정되어야 한다. 많이 사용되는 지불의사 측정방법(비시장가치방법)을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그러나 위의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치들을 계량화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어메니티의 가치를 모든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OECD, 1999).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정교한 모델개발을 통하여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어메니티의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불의사도 파악되지 않은 채 외부의 투입에 의존하여 농촌활성화가 졸속추진되어서는 안된다.

3. 어메니티의 소비 대상

농촌 어메니티의 주 소비대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각 연령에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어메니티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결국 어떠한 이용자 집단이 주 이용자가 될 것인지 고려하여 프로그램과 제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농촌 어메니티를 이용하더라도 농촌생활의 경험이 있고 농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방문한 이용자와,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방문한 이용자는 같을 수 없

다. 특히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젊은층은 편리한 시설에 대한 욕구가 강한 반면 불편은 잘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농촌 어메니티를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많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농촌 어메니티를 통한 농촌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4. 어메니티의 개발과 차별화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 농촌 정체성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소비자들은 어메니티에 대한 직접소비 대신 매스컴을 이용한 간접소비를 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메니티의 경우 한 번 직접소비를 유도하고 그 곳을 이용한 소비자가 다시 그 곳을 찾을 확률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성 소비자가 많다면 결국 어메니티를 통한 농촌활성화는 힘들게 된다. 또 각각의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로의 시장성을 상쇄하게 된다.

5. 어메니티의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

농촌 어메니티의 비경합성(non-rival)과 배제 불가능성(non-excludable)이 고려되어야 한다. 순수하게 비경합적인 공공재의 공급은 개별적 소비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다(OECD, 1999). 자연경관처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가지는 어메니티는 완전한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작물이나 임산물, 어류, 동물 등은 포획과 어로에 의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촌 어메니티는 비경합성이 높은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투입이 적기 때문에 유리하다.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라도 수용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용 등으로 경합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수용력 범위내에서의 소비가 필요하다. 배제 불가능성은 어메니티를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특정인을 배제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경관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 어메니티에 대한 시장형성과 보상체계 수립이 곤란해진다. 이 경우 배제 불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IV. 결 론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은 농촌공간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촌에 존재하나 적극적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웠던 여러 가치들이 어메니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농촌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중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메니티라는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농촌경제여건을 개선하고 농촌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각 정부 부서에서도 어메니티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농촌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어메니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계획,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 초기에 다른 곳보다 앞서서 결과를 내려는 욕심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줄

속 시행되고 있는 것도 많다. 초기에 외부의 지원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시작한 경우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입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사업이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어메니티를 통한 농촌활성화는 외부에서의 투입이 없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자체의 보상체계와 계획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무계획적인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어메니티의 분류와 획득, 소비에 대한 보상체계, 지불의사 평가 방법, 소비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지표가 개발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 참고 문헌

1. 김해창, 1999, 어메니티 눈으로 본 일본, 서울: 열음사.
2. 마거릿 버트하임 지음, 박인찬 옮김, 2002, 공간의 역사, 서울: 생각의 나무.
3. 막스 호르크하이머·테오도르 아도르노 지음, 김유동 외 2인 옮김, 1996,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예출판사.
4. 미셸 푸코 지음, 이광래 역, 1986,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5. 박영한·조영국, 2002, "산업화·탈산업화가 농촌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지리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47-174.
6. 사공 용, 2002, WTO 체제하에서 농업정책,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7. 사카이 겐이치(酒井憲一) 지음, 김해창 옮김, 1998, 어메니티, 서울: 뜨님.
8. 야마자키 미쓰히로(山崎光博) 외 2인 지음, 강신겸·김정연 옮김, 1997, 녹색관광, 서울: 일신사.
9. 유진채, 1999, "환경보전형농업의 현황과 과제," 농민과 사회, 통권 제21호: 16-33.
10. 이안 바울러 지음, 김기혁 옮김, 1999, 서유럽의 농업변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11. 이진경, 1997,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12. 임형백·윤준상, 1999. 12, “농촌지도의 두 가지 관점의 비교: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의 비교,” 한국농촌지도학회지, 6(2): 105-118.
13. 임형백, 2001. 12, “어메니티의 개념, 기원과 역사,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8(2): 191-199.
14. 한스 요나스 지음, 이진우 옮김, 1994,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울: 서광사.
15. J.B. カリンク°ワース, 1972, 英國の都市農村計劃, 久保田誠三監譯, 都市計劃協會.
16. 環境廳監修·國際環境問題研究會譯, 1978, OECDレポート 日本の經驗-環境政策は成功したか, 日本環境協會.
17. Champion, T., 1998, “Studying Counterurbanisation and the Rural Population Turnaround,” in P. Boyle and K. Halfacree(eds.), Migration into rural areas: theories and issues, Mannion, A.M./ Chichester: John Wiley & Sons.
18. Countryside Commission, 1991, Visitors to the Countryside, CCP341.
19. Johansson, P. O., 1994, “Characteristics and Valuation of Rural Amenities,” in the Contribution of Amenities to Rural Development, Paris: OECD.
20. Lewis, G. J., & D. J. Maund, 1976, “The Urbanisation of the Countryside: a Framework for Analysis,” Geografiska Annaler 58B: 17-27.
21. OECD, 1997, “Toward policies for the ‘Mise en Valeur’ of rural Amenities,” OECD document [C/RUR(97)5], Paris: OECD.
22.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Paris: OECD.
23. OECD, 2000, Valuing Rural Amenities, Paris: OECD.
24. Smith, D. L., 1974, Amenity and Urban Planning: The Origin and Role of the Aesthetic Element in Modern Practice, London: Crosby Lockwood Staples.

(2002년 9월 9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

<부록 1>

농업-환경정책하의 보조계획(규칙2078/92)

규칙2078/92의 제2조 : 보조계획

1. 환경과 전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면에서 본 계획은 다음 조건을 수행하는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다.
 - a.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크게 줄이거나, 이미 시행하고 저투입 농법을 유지하거나 유기농업을 도입하거나 계속하는 경우
 - b. a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건초를 포함한 조방적인 작물생산이나 조방적인 생산방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고 경지를 조방적인 초지로 전환하는 경우
 - c. 목초지 면적당 영과 소의 마리수를 줄이는 경우
 - d. 환경 및 자연의 보호와 전원과 경관의 유지에 필요하고 농업경영과 양립할 수 있는 생산방법을 실시하거나 멸종위기의 토종가축을 사육할 경우
 - e. 폐경지나 산림지를 유지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
 - f. 생물의 소생활권(biotope)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원의 설치나 수계체계의 보호 등의 현실적인 환경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 등을 위해서 최소 20년 동안 휴경한 농지에 대하여
 - g. 공중의 통행과 여가활동을 허가하도록 토지를 경영하는 경우
2. 추가적으로 본 계획은 환경과 양립할 수 있는 농업경영과 산림관리와 관련된 농민의 훈련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1992, 유진채, 1999: 26-27 재인용.